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5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2월 12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 제11기 위원 임기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연임 기한 4년을 초과한 위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부칙의 시행일을 2019년 2월 1일부터로 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
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구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